

# 국제 VAN 서비스무역 개발

## 目 次

### I. 序 言

1. 行政府의 分割, VAN 提供者 및 使用者 役割

### II. 高度의 電氣通信 및 情報서비스의 發展

### III. 兩國間 및 地域協定

### IV. 우루과이라운드 協商 및 電氣通信

### V. 要約(Overview)

### I. 序 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여하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VAN/VAIS)에 대한 대내외적인 정책을 재고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시의적이고도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은 고도의 서비스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로는 그러한 서비스가 현대의 사업에 이용됨으로써, 보다 많은 판매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제국에서도 그들의 사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그러한 서비스의 자유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사업이익을 위한 통신역량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비록 VANS 및 국제 VANS (IVAN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와같은 고도서비스 제공업자들의 대내외적인 설립과 허가가 포괄적인 국가 전기통신계획의 일환이거나

혹은 그와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많은 전기통신관계 전문가들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만약 VAN 정책이 그자체로서 개별적인 정책하에 있거나 혹은 일반공공 전기통신서비스의 목표보다 우선권을 부여받게 될 경우, 그것은 하극상에 해당된다고 누군가는 지칭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가의 전기통신 기간구조의 품질과, 보다 증가하는 지역적·상업적 서비스수요에 그러한 기간구조가 얼마만큼 잘 대응할 수 있는가가 어떠한 내용의 VAN 협약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발전에서 공공전기통신기간구조 및 설비가 담당하는 중심적인 역할이라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VANS에 대한 고려는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전화, 텔렉스 및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최소한 ITU 내의 150개 국가에서는 여전히 독점적인 기반에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대표단이 1990년 7월 9일 GNS 실무단체 앞으로 보낸 비공식문서에서 기본 서비스를 구조협정(Framework Agreement)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를 진술했던 사실은, 상당히 합법적인 국가정책 이익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에 대한 한국측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다른 종류의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경로로서의 역할 (2) 대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독점적인 위치 (3) 보편적인 서비스의 수립 및 유지, 그리고 (4) 국가안전상의 고려” 등이었다.

현대의 전기통신은 기술적 진보라는 형태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컴퓨터-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보다 자유화된 상황을 요구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와 같은 과정에는 또한 전통적으로 규제하에 놓여있었던 전기통신부문과, 거의 전적으로 비규제화 상태에 있었던 데이터 처리산업간에 상당히 오랜기간에 걸친 이념대립현상이 있어왔다. 공공이익이라는 논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존의 전기통신 운영체계를 존속시켜 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조건과 규칙의 융통성과 아울러 보다 상업적인 기반이 예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이와같은 새로운 환경을 인식하고 또 그에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OECD 회원국가들은 전기통신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을 겪어 왔는데, 즉 기존에는 전기시설과 같은 공공재로서 인식되었던 전기통신이 이제는 상업적인 활동, 나아가서는 국제무역서비스의 대상으로까지 부각됨을 주시하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전기통신 공동체(여기서는 공중통신제공업자, 고도서비스 제공업자, 설비제조업자 및 사용자를 통칭함)들의 경우 모든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가 다원적인 무역구조하에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랄 수 있는 것은 이미 유럽, 일본 및 미국등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재규제화되어 있는 별개의 규정 및 절차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라고 하겠다.

### 1. 행정부의 분할, VAN 제공업자 및 사용자 역할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형식과 범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조직체(기업과 단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 무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ITU 범위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에 있어서 세가지의 주체가 존재한다. — 행정기관(공중통신제공업자), VAN 서비스 제공업자, 그리고 사용자(지역적 및 사업적)가 그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경우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구조를 소유·운영하며, 사적인 사용을 위해 공공에게 공공회선을 임대(전용회선)하기 위한 사업허가를 관할하며, 또한 제삼자 및 전기통신의 최종고객에게 고도의 VAN 서비스를 전매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보기와는 달리 그 경계선을 명확화·단순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있다.

그와 같이 위의 세 주체에 대한 명백한 경계설정이라는 것이 점차 모호해 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국내지상 기간구조의 경우 단일행정부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는 한편, 육상이동(land-mobile)과 셀룰라 그리고 위성서비스등은 점차로 여러국가들에서 다수의 기업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은 복점정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또다른 참가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또한 항간에는 Continent national railroads and/or electricity boards가 기본설비운영자가 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사실운영기관이라 할 수 있는 VAN 제공업자 및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제 삼자에게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내리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로는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최소한 그들의 내적수요에 필요한 자체적인 VAN 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초과역량과 높은 투자는 재정기관과 같은 기업체들로 하여금 그러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고려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용자들이 이러한 설비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는 전적으로 행정부관할에 있었던 VANs에의 “접속 및 사용”권에 대한 요구가 보다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0년 3월에 우루과이 라운드내의 전기통신 GNS 실무자그룹(MTN, GNS/W/97)에 제출한 내용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통신 실무자들간에 하나의 파문을 일으켰다고 하겠는데 즉, 기존의 세가지 측면상에서의 협의(운영자, VAN 제공자, 사용자)는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다국적인 관점을 내포하는 또다른 측면으로는 국

가들이 그와 같은 상황으로 신속히 그리고 일관성있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Complete text published in *Transnational Data and Communications Report*, April 1990, page 27)

가장 관심을 모았던 두가지 면은 公衆電氣通信轉送 서비스와 使用者에 대한 개념정의 문제였다. 공공전기통신 전송서비스란 “사용자정보의 형식과 내용 및 프로토콜에 있어서 종단점간에 변화가 없는 실시간 전송에 필요한 교환, 신호처리 및 정보축적 혹은 프로토콜 변환을 포함한 2지점 이상간의 사용자제공정보의 실시간 전송에 국한되어지며 그러한 서비스는 공공통신제공업자의 기반에서 제공되어 진다. less-than-separate 기반에서의 다수의 서비스제공자로서 및 ISDN 서비스를 통합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의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이와같은 미국식의 개념정의는 필요이상으로 공공서비스운영자를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다. “마치 그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을 벌하려고 의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유럽의 한 상급행정가에 의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사용자라는 용어는 “사용자로 허가되어진 모든 고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만약 사용자들이 회원국 (Parties) 과의 협약하에서 어떤 부문의 서비스접속 및 사용이 가능한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면허를 받지 않거나 특허를 받지 않는 VANs 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내통신에 대한 미 문서에는 개념정의되어있지 않은 용어이다. 1990년 7월에 미대표 (delegation) 는 제 삼자에 대한 서비스판매를 제외하는 개념을 제공한 바 있다.

“企業內通信”이라는 용어는 자회사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되어지는 단일기업체내에서 대내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와같은 통신은 이윤을 위하여 제삼자 (비관련) 에게 제공되어질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기업내 통신이 아닌 제삼자 통신으로 간주되어 진다.

이와같이 기업내 통신의 판매에 대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미국문서의 3절 6항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전송 서비스의 고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와 같은 공중전기통신 전송서비스의 판매 및 공유”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포함한 고객택내기기의 구입 혹은 임대 및 설치가 공공전기통신 전송망에 아무런 기술적 손상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동일사용자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전용회선간의 상호접속, 혹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전용회선간의 상호접속”

“그러한 사용자들간에 상호동의 및 협정되어진 규정 및 조건하에의 상호접속”

“상호접속 전용회선과 관련된 교환, 신호 및 처리기능의 수행”

“공공, 교환통신망 (public, switched networks) 간의 다이얼 업 액세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도 균등한 규정 (terms) 에 의거한 공공, 교환통신망과 전용회선간의 상호접속”

“집단내 혹은 집단간의 정보의 이동, 축적 및 처리”

전기통신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더하여 소위 觸媒的인 役割이라든가 提供方法으로서의 기능 및 행정부의 운영역할은, 수직적부문으로서 전기통신을 검토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은 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편, 비가시적인 서비스무역의 전형적이자 두드러진 특징이랄 수 있는 전기통신의 또다른 측면으로는 바로 기기와 서비스간의 상호의존성이다. 즉,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설비, 모뎀, 텔레팩드 기기, PABX 혹은 VSAT 등과 같은 특정 기간구조요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서비스의 전송 및 수신을 위해서는 기타 여러가지 조건을 포함한 필요설비와 서비스간의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 II. 高度의 電氣通信 및 情報서비스의 發展

VANs, 정보서비스 혹은 고도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ITU에 있어서조차도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한편, 이들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일반적인 이해가 진전되어 왔다고 하겠다. ITU의 사무총장인 Pekka Tarjanne는 지난 1989년 12월 런던에서 있었던 회의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VANs에 대한 기술적 개념정의는 불가하다고 본다. “부가가치”라는 용어는 사실상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걸쳐서 경제적이고도 규제적인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의 목적은 매우 경쟁적이고도 비규제화된 컴퓨터관련 사업과 심한 규제하에 있으며 비경쟁적인 전기통신사업간에 하나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OECD는 그와 같은 VAN을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기능적인 정의를 고안해 왔다. 즉 그 조직은 TNS(telecommunications network-based services: 전기통신망에 준한 서비스)라는 용어를 새로이 개발해 냄으로써 국제비교 및 정책논의상에서의 하나의 공통적인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이에 의하여 TNS란 “정보생산, 조종, 축적설비 및 소프트웨어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몇몇 국가에서 수용되고 있는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금융서비스와 제조부문의 TNS의 사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VANs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술적·규제적 정의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공공재로서의 기본적 공공전기통신서비스를 경쟁적이고 무역적인 측면으로부터 명확히 그 경계선을 설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VANs의 기원은 정보서비스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시초의 서비스를 보면 다음과 같다. Reuters, Mead Data General과 Lockheed Information Services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정보검색서비스; Gener-

al Electric Information Services(GEIS), Infonet사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처리 서비스; 그리고 폐쇄적으로 회원들에게만 제공되어지는 SWIFT와 SITA를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상업적 VAN/VAIS의 범위에 전자 우편과 전자정보교환(EDI)과 아울러 경영통신망서비스(MNS)도 포함되고 있다. VANs/VAIS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숫자와 다양한 서비스들이 급속한 추세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거대한 다국적기업(MNC)이 자체적인 비상업적 VANs/VAIS에로의 사용자 이전현상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미국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다. 사용자들은 현재 사업통신망(ENTERPRISE NETWORKS)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VANs/VAIS의 세계시장규모에 대한 조사 및 측정은, 시장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System Dynamical 및 Frost & Sullivan사와 같은 몇몇 단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와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성장패턴은 상당히 인상적임을 알 수 있다. 시장규모의 성장은 국경간의 경계가 없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극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MNS와 메시징 부문에서 그 증가현상이 두드러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1 참조)

그와 같은 국제적인 VANs/VAIS의 추진력이 되고 있는 두가지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1)MNCs의 기간구조에 투입되거나 전기통신행정부(TAs)에 의해 제공되어 지는 컴퓨터-통신용량의 진전

(2)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행정부의 자유화 정책

## III. 兩國間 및 地域協定

1993년에 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유럽공동체(EC)의 계획 또는 향후 VANs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의 12개 회원국중 몇몇 국가에서의 전기

〈表 1〉 서비스별 VANs 시장규모

(단위: 백만달러)

유 럽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000
정보서비스	1,653	1,875	2,129	2,412	2,735	3,102	3,451	3,835	6,492
처 리	729	906	1,121	1,378	1,652	1,950	2,287	2,608	5,091
메 시 징	142	199	287	395	508	654	822	1,031	3,244
M N S	115	181	283	426	633	778	955	1,145	2,952
기 타	71	97	131	177	222	275	341	423	573
총 합	2,710	3,258	3,951	4,789	5,749	6,759	7,855	9,043	18,353
북 미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000
정보서비스	4,400	4,884	5,421	6,018	6,619	7,281	8,009	8,730	13,433
처 리	1,724	2,082	2,507	3,002	3,560	4,065	4,542	4,975	7,953
메 시 징	520	731	1,007	1,358	1,815	2,324	2,819	3,426	9,381
M N S	351	527	790	1,106	1,548	1,857	2,229	2,675	6,656
기 타	483	594	731	899	1,034	1,189	1,367	1,572	1,808
총 합	7,478	8,818	10,456	12,382	14,576	16,717	18,967	21,378	39,230
일본 및 극동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000
정보서비스	987	1,184	1,421	1,706	1,961	2,256	2,594	2,983	6,000
처 리	617	853	1,181	1,640	2,149	2,578	3,094	3,616	8,035
메 시 징	79	121	176	256	363	495	661	867	3,510
M N S	78	125	187	281	393	550	715	859	2,136
기 타	98	137	192	250	325	390	467	561	726
총 합	1,859	3,158	3,158	4,132	5,191	6,269	7,532	8,885	20,411

자료 :Systems Dynamics, Communications International(July 1990)에서 재인용

통신행정부(TA)들은 국내시장의 개방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전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VAN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지침(Telecommunications Services Directive)이 수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에 있어서는 독점 서비스(reserved services)의 범위를 기본전화 서비스와 텔렉스에 국한시키고 있다. 유럽전역간에 ISDN에 준한 강력한 전기통신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는 EC측의 의도가 위와

같은 지침 및 새로운 위성정책(그에 대한 녹서가 10월에 발표예정임) 준비에 대한 추진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 1988년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고도서비스와 컴퓨터서비스등이 포함되는 세부항목별 부속서뿐만이 아닌 두 국가간의 서비스무역, 투자 및 임시적인 시장침입 등에 대한 일관적인 구조가 기술되어 있다. 이에 있어서 기본전기

통신 서비스는 다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에는 고도서비스 -- 기본통신망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사용; 기본통신망의 전매 및 공동사용; 통신망의 단말설비의 구매, 임대 및 설치등의 포함된 -- 제공과 관련한 다수의 권리와 의무도 기술되어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IVANS 제공의 법적 근거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규제는 일본우정성에서 관할하고 있다. 1987년 3월부터 199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일 양국은 특별 제2종 IVANS, 프로토콜 및 여타 문제등에 대하여 논의를 개진하여 왔다. 1989년에는 일본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미 IVANS의 허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그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1990년 7월 31일에 미무역성과 일본 우정성 대표간의 문서교환으로 그에 대한 견해차이가 명백히 해결되었다.

1990년 8월 1일, 미 대사 Hills는 “전기통신재화와 서비스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이고도 비차별적인 일본시장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단계별 조치”라는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일본은 음성우편 및 전자금융 등과 같이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거대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고도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개방화를 위한 몇가지 중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참여인가절차는 보다 능률화되고 또 명백화하고 있다. 미국기업은 일본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미국간 또는 해외의 여타지점간의 지역에 대해 이와같은 고도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 정부는 어떠한 규제상의 제한이나 지연이 있을 경우 협의회를 개진할 것이다.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보면, 일본내의 모든 미국기업체들이 현재 규제상의 제한이 없이 기업통신-자회사간 혹은 일반사용자 및 제공업자들간의...을 제공할 수 있게 될것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 여타 기업체들은 그들의 운영을 보다 쉽고 경제적으로

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에는 전기통신서비스 부문에서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주요 전기통신제공업자는 그들과 경쟁상태에 있는 미국기업에게 국제전기통신설비임대에 대하여 20%에 달하는 추가요금을 받음으로써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던 기존의 행위에서도 탈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우정성의 정책담당자 차관인 Mr. Mitsuo Igarashi는 USTR에 대해 보낸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는데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TBL)에 의한 외국기업체와의 협정의 재고가, 사설협정의 사업규정을 바꿈으로서 미국소유의 기업체에 손상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고도의 혹은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1종 통신제공업자들이 제2종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한다. (3) 일본의 팩시밀리 서비스시장에 대한 미기업의 시장접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부속서 A)

1988년 10월에는 미국과 영국간에 국제사설임대 전기통신회로(IPLCs)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양국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공식적인 성명서에 따르면, 부가가치 및 데이터 서비스(VAIDS)의 경우, 접속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CCITT 권고에 준할 의무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독점적인 기준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 두 국가간의 협정조항내용은 미국과 일본간의 IVAN 협정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이국간 협정 및 EC의 VAN 정책은 이제 그밖의 여러 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례로 얼마전 국무성관료가 홍콩을 방문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실행 여부를 타진해 보기도 하였다. 미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들간에 이와같은 기본항목에 관한 협정들이 일반규범으로 그 위치를 굳혀나가게 하기위해 노력중이다.

#### IV. 우루과이라운드 協商 및 電氣通信

지난 3년 반에 걸친 심의과정을 통하여, 서비스협상 그룹(GNS:the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은, 특정부문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다른 여러부문 생산물의 제공방법으로서의 전기통신의 중요성을 확실히 파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협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원칙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전기통신 및 여타 5개부문에 있어서의 Sectoral Texting exercise 가 지난 1988년 GNS에 의해 시행된 바 있다. 또한 보다 최근에는 전기통신에 관한 실무자그룹(a Working Group on Telecommunications;WGT)을 결성하여 이 부문의 전형적이고도 고유의 조항을 설명하는 부속서(annotation)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제공방법 (Mode of Delivery)

서비스부문이라는 한 측면과 여타 다른 서비스의 주요제공방법이라는 또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 전기통신은, 그러한 이중적 역할로 인해 보다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또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두가지 유효한 측면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인도의 Zutshi 대사가 주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측의 견해는, 전기통신이 국가간의 전종류의 서비스부문을 개방하기 위한 요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Zutshi 와 여타 개발도상국측의 협상자들은 여러부문에 확대된 시장접근허용은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사용에 대한 권리와는 별도로, 그리고 보다 적절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부속서에서 제안된 바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사용자권리의 무제한적인 요소(blank cheque)에 동의해야 하는 위협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트로이 목마”와 같은 위협성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 G-4 문서에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은 효과에 대한 것이다. “제공방법으로서의 전기통신과 관련한 조항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 기간구조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이익상의 상충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와 같은 접속 및 사용조건에는 국내와 국제회선임대, 상호접속조건, 기술설비설치에 대한 적용기준 및 규정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공방법에 관한 부속서는,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부속서와는 별도로 G-4 그룹에 의해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곧 하나의 문서로 편성될 예정이다. WGT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하에서 제공방법조항을 고려해왔다.

1. 그러한 부속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기통신 역량내에서 일단규정되어진 시장접근규정의 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annotation)
2. 그와 같은 부속서는, 구조협정내에서의 협상규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통신을 포함한 기타 부문에서의 개방화를 초래하지 못한다.
3. 국가의 계획에 있어서 시장접근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부속서가 어떠한 전기통신 서비스제공의 개방화도 초래할 수 없다.

##### 시장접근 (Market Access)

전기통신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대한 미 부속서는 전기통신행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종류의 사용자를 불문하고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취급범위의 서비스와 기업내 통신을 포함한 한 그룹의 영토내에서”라는 목록이다. (1) 그러한 전기통신전송서비스의 전매 및 공동사용 (2) 공공전기통신전송망에 어떠한 기술적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고객택내

기기설비의 구매 혹은 임대 및 설치, (3) 전용회선의 상호접속; 그리고 (4) 정보의 이동, 축적 및 처리 등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요건들은 국내시장에 있어서 지역기업(local firms)보다 외국기업체에게 보다 큰 권리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이미 시사된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규제 및 운영구조의 안정성에도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강압적인 접근방식과는 대조적으로, G-4 제언(proposal)에서는 시장접근개념이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제기하고 있다. (1) 회원국의 국내사용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사업체에게 우선대우를 확대해 나가지 아니한다. (2) 지역규정(local condition)에 의 적절성 및 호환성에 의거하여 전기통신상의 수입과 아울러 국내시장에서의 운영이 허용되어진 기술 및 기기를 Party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간섭할 수 있다. (3) 국가계획상에서 시장개방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속서가 서비스제공의 개발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투명성(Transparency)

전기통신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투명성의 의무는 독점적이거나 혹은 배타적인 제공업자 환경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적인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투명성의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시키는가 하는 점에서는 국가간의 견해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투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기술상의 명확성의 단계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전기통신서비스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ITU를 비롯한 여타 지역적 혹은 지역간 기구내에서 그에 대한 추진

및 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지지되고 있는 바이다. 현재는 공공전기통신망 및 그와 같은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필수적인 표준이 전반적으로 심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의 경우, CCITT나 여타 표준권고에 나타난 어느 규정과는 달리 통신망에의 "손상을 입치지 말것(no harm)"이 강조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EC 측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공공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서 사설의 독점표준을 채용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문은 공공통신망과 접속되지 않는 전용회선이 그와 같은 독점표준에 일치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더하여 필수적인 표준이 부가가치통신망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어떠한 견해에 따르면 필수적이고도 독점적인 표준이 부가가치서비스에 상호병존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있다. 그와 같은 필수적인 표준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는,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통신망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 V. 要約(Overview)

VANs/VAIS 서비스가 무역대상이 될 것인가 및 그것이 우루구와이라운드 서비스구조협정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WGT에 참가한 50여개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렇다할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문제는 기본적 공공전기통신서비스에 어떻게 다국적 무역원칙을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보다 나아가서는 제공방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전기통신의 이중적 역할을 어떻게 기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 VANs/VAIS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된 사업고객들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수긍하고 있는 현황이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에 조인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하나이상의 VANs 이 국내전기통신행정 부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서 다원적인 VAN 제공환경이 이루어져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앞으로의 국내 및 국제적인 VAN 정책을 평가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VANs 이 환경을 결정하는 보다 큰 전기통신역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VAN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 전기통신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보다 큰 사업의 발전된 진화의 한 단계로서의 측면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국제사업운영의 실제적 변화 및 기술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정책입안자들은 그러한 상호연계성을 제대로 주지하여 VAN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